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4월 14일
- 나. 발 의 자: 우경란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경란 의원)

-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준공 시설물의 하자 발생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자 관리 의무를 두고 있으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공종별 상이하며 대부분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숙지 미숙 등을 이유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함.
-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 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자 제정됨.

○ 주요 내용으로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하자 검사의 적용 범위, 방법, 지도점검 관련,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하자 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안 제9조에서는 하자 검사내역 홈페이지 공시의무를 담아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우리 구(區)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 공사를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와 동일하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하자 검사 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자료 보관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음.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하자 검사 실시 후 사후조치로 필요한 지도점검 규정을 담고 있음.
- 안 제7조 및 제8조는 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우리 구(區)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연계된 공사 하자 관리대장에 입력 후 하자 검사의 무 이행 촉구를 위해 사후 관리 통보, 하자 검사 이행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공종별 하자검사 내역의 통계관리와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의 실시와 하자 검사조서의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여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하자 검사 실시 후 사후 조치로 필요한 경우 하자 검사 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철저한 하자 관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공사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하자 관리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의 준공 후 하자 검사 결과를 통계 관리하며 그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공사의 책임 있는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경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3
----------	-----

발의연월일: 2025. 4. .

발의자: 우경란, 유승용, 이규선
전승관, 양송이, 정선희
의원 (6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바.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공무원이 하자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등포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

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임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영등포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